

○○중 학교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원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14가단 ○○○○○○	사건유형	소유권이전등기
원고	○○○	피고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
판결선고일	2015. 8. 13.	비고	
사건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고의 선친 ㉸㉸㉸은 인천 ㉸㉸㉸군 ㉸㉸면 ㉸㉸리 산 24-10(5,246㎡)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를 1953. 9.10. ○○중학교 부지사용 명목으로 경기도에 증여(기부)하였고, 1995. 7. 24.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며, 위 토지 일부는 2000. 3.24. 인천 ㉸㉸㉸군 ㉸㉸면 ㉸㉸리 산 24-25(737㎡)로 분할되어 이기 됨. - 원고는 망 ㉸㉸㉸이 위 토지를 기부한 이후에도 인천 ㉸㉸㉸군 ㉸㉸면 ㉸㉸리 산 24-10 산 5,246㎡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하여왔으나, 2014. 10. 7. ○○중학교장이 원고에 대하여 620㎡를 무단 점유·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. 이에 민법 제245조에 따라서 1973. 9. 10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 제기 		
주문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		
청구취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㉸㉸㉸군 ㉸㉸면 ㉸㉸리 24-25 전 737㎡에 관하여 1973.9.10.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△△등기소 1995.7.24. 접수 제*****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		
판결이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고가 주장하는 시효 완성 당시인 1973. 9. 10.에는 이 사건 토지소유자는 경기도 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 볼 수 없음.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진 1995. 7.24.로부터 20년이 지나기 전인 2014. 10. 7. 변상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온, 공연한 점유는 깨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. 		